



석유 수입부과금 적정화 필요성

- 대한석유협회 -

1. 석유수입부과금 제도 개요

■ 목적 및 한도

- 석유수입부과금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석유 1리터당 36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(석유사업법 제18조)
※ 99.12월 개정(중전 : 1리터당 12센트의 범위)

■ 징수대상자 : 석유(LNG포함)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수입업자

■ 부과기준

- 원유 : 1.7\$/배럴
- 석유제품 : 1.7\$/배럴
※ 현재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상기 부과기준을 석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 하기 위한 개정작업 추진중.

■ 납부기한 :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

■ 면제 및 환급대상 :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및 공업원료용, 발전사업용, 비축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등.

■ 용도 : 부과금 수입중 환급액을 제외한 순징수액은 전액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 전입되어 장단기 에너지정책을 위한 주요재원으로 사용.

2. 현행 석유 수입부과금 제도의 문제점

■ 현행 원유와 석유제품의 동일 부과금은 석유수급 안정성 저해 우려

- 수입부과금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통한 에너지 수급안정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,
- 일부 석유수입업자가 계절적 요인등에 따라 마진이 좋은 특정석유제품만을 선택하여 수입공급하면 석유의 연산품 특성상 국내석유수급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결과 초래 우려.
- 이는 '97년말 외국의 투기자본이 급격히 철수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IMF사태를 맞게 된 것처럼, 수입업자의 수입이 성행하게 되면 국제 석유시장 불안시 국내시장은 위험에 직접 노출될 수밖에 없음.
- 통상, 원유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정제판매하는 방식이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방식보다 안정적인 국내 석유공급기반을 구축하는데 유리함
- 이에 따라 모든 석유소비국은 석유수급안정의 중요성 때문에 '소비지 정제주의'를 채택하고 있는 바, 원유와 석유제품간의 동일수준의 부과금은 소비지정제주의에 배치됨
- 1, 2차 석유파동 및 걸프사태시 석유제품 수입의 어려움과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폭등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음.

■ 무역수지 악화 초래

-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하여 진력하고 있는 상황에서, 국내생산분만으로도 내수충당에 충분한 석유제품에 대하여 원유와 동일한 부과금이 부과되면 원재료(원유)에 의한 국내생산보다 완제품 수입을 선호하게 되어 Hit & Run식으로 추가적인 제품수입을 조장함으로써 무역수지 개선이라는 국가 정책목표와 괴리.
- 또한, 대다수 외국의 경우 원유와 제품간의 관세를 차

이가 2배~11배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원유/제품간 관세제도 차이로 인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제품을 수출하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여건이 불리한 교역조건의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있음.

■ **현행 수입부과금 부과기준은 국내 정제업자에 대한 역차별이며,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**

- 국내정제업자는 석유정제시설 및 저장시설등 부대시설 건설을 위해 막대한 투자비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, 수입업자는 별다른 투자없이 단순히 저장시설만을 임차하여 마진이 좋은 특정 석유제품만을 수입하고 있으므로 정제업자와 수입업자간에는 비용측면에서 볼 때 공정한 경쟁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
 - 따라서 정제업자와 수입업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공정경쟁 취지에 어긋나며, 오히려 국내 정제업자에 대한 역차별임.
- 또한, 가치가 상이한 물품에 대하여 물량기준으로 동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며, 이는 제품간 가격구조의 왜곡을 초래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게 됨.
 - '99년 기준으로 원자재인 원유의 수입가격은 수입의 주종을 이루는 경질석유제품에 비해 약 65.6% 수준에 불과

■ **외국의 경우 원유와 석유제품간의 관세율 차이가 2배~11배**

- 대부분 외국의 경우 상기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원유와 석유제품간의 관세율차이가 2배~11배가 되고 있음
 - 주요 외국의 원유 및 석유제품 관세율 현황 : 건의문 참고
- 우리나라도 원유와 석유제품간의 동일 관세율 적용이라는 관세제도의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진 바 있으나, 현재도 원유와 석유제품간 동일관세율(5%)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.

3. 수입부과금 부과기준 개선방안

가. 기본방향

- 국내수급 안정성 확보 및 정제업자와 수입업자간 공정경쟁 여건조성, 국제수지 등 국가전체적인 국익측면을 감안하여 원유와 석유제품간 부과금의 적정수준 차이는 반드시 필요함.
- 현재 산업자원부에서도 상기와 같은 측면을 감안, 원유와 석유제품간 부과금 적정화(현실화)를 추진 중(석유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, 2000.5.20)에 있음.
 - 원유 : 13원/ℓ
 - 휘발유, 등유, 항공유, 경유 : 19원/ℓ

나. 적정 부과금 수준

- 적정부과금 수준
 - 원유(리포메이트 포함) : 1.7\$/B <13원/ℓ >
 - 석유제품 : 1.7 + 2.15 = 3.85\$/B <29원/ℓ >
- 적정화폭 : 가치비율(0.90\$/B) + 차등관세차이 (1.25\$/B) = 2.15\$/B <16원/ℓ >
 - 가치비율 반영 : 원유와 경질석유제품간 수입가격차이 반영

(단위 : \$/B)

	원 유	석 유 제 품			
		휘발유	등유	경유	평균
'99수입가격	16.11	23.59	25.24	23.92	24.56
현행부과금 (부과금비율)	1.70 (10.6%)	1.70 (7.2%)	1.70 (6.7%)	1.70 (7.1%)	1.70 (6.9%)
원유부과금비율감안시 (현행부과금과의 차이)	1.70 (0)	2.50 (0.80)	2.68 (0.98)	2.54 (0.84)	2.60 (0.90)

- 관세율차이 반영 : 원유와 제품간 적정 관세율차이 반영
- 석유제품 관세율은 원유대비 최소2배(10%)이상 유지 필요(원유 25\$/B 기준시 차등 5%효과 : 1.25\$/B) ☹️